

## 체육시설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6]

### 안전·위생 기준(제23조 관련)

1. 공통기준

2.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

사. 수영장업

(1) ~ (4) 생략

(5) 수상안전요원(대한적십자사,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업협회 또는 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욕수의 조절,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, 수영조를 점검한 후 수영자를 입장하게 해야 한다.

(6) ~ (10) 생략